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11.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11.)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19-30호)]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하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오니 청약접수 시 거주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18.07.11. 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하여야 함)[적용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illegible]

방법	인터넷청약(08:00~17:30)			개별조회(www.apt2you.com) 로그인 후 조회가능	-
장소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당사 견본주택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31427호(2019.07.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가야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36층 6개동 총 935세대 중 일반공급 640세대(특별공급 총261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5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단위 : ㎡, 세대]

구분	39.9769	59.9227A	59.9937B	84.9919A	84.9683B	102.5328	합계
총세대수	84	272	62	311	105	101	935
일반	-	241	58	199	98	44	640
조합	-	31	4	112	5	57	209
임대	84	-	-	-	-	-	84
보류지	-	-	-	-	2	-	2

- 입주시기 : 2022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주택	2019000639	01	59.9227A	59.9227	22.5799	82.5026	43.9154	126.4180	27.0136	241	24	24	48	7	103	138	8
		02	59.9937B	59.9937	24.2398	84.2335	43.9674	128.2009	27.0456	58	6	6	11	2	25	33	2
		03	84.9919A	84.9919	28.3841	113.3760	62.2878	175.6638	38.3150	199	20	20	40	6	86	113	9
		04	84.9683B	84.9683	30.0496	115.0179	62.2705	177.2884	38.3043	98	9	10	20	3	42	56	3
		05	102.5328	102.5328	33.0786	135.6114	75.1427	210.7541	46.2226	44	-	4	-	1	5	39	3
합계										640	59	64	119	19	261	379	25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세대수	동별(라인별)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1차납입후 30일이내	중도금(60%) 1회(10%) 2020.03.10	2회(10%) 2020.06.10	3회(10%) 2020.11.10	4회(10%) 2021.04.12	5회(10%) 2021.09.10	6회(10%) 2022.02.10	잔금(30%) 입주지정일
59.9227A	152	101,106동(5호) 101동(3호) 103동(1,2호)	1층	4	98,329,504	227,770,496	-	326,100,000	20,000,000	1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32,610,000	97,830,000
			2층	5	98,329,504	234,870,496	-	333,200,000	20,000,000	13,320,000	33,320,000	33,320,000	33,320,000	33,320,000	33,320,000	33,320,000	99,960,000
			3층	5	98,329,504	241,970,496	-	340,300,000	20,000,000	1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34,030,000	102,090,000
			4~5층	10	98,329,504	245,470,496	-	343,800,000	20,000,000	1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34,380,000	103,140,000
			6~10층	24	98,329,504	249,070,496	-	347,400,000	20,000,000	1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104,220,000
			11~20층	45	98,329,504	252,570,496	-	350,900,000	20,000,000	1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105,270,000
			21층~	59	98,329,504	256,170,496	-	354,500,000	20,000,000	1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106,350,000
	60	102동(4,5호)	1층	1	98,329,504	217,970,496	-	316,300,000	20,000,000	1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94,890,000
			2층	2	98,329,504	224,870,496	-	323,200,000	20,000,000	1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96,960,000
			3층	2	98,329,504	231,770,496	-	330,100,000	20,000,000	1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99,030,000
			4~5층	4	98,329,504	238,570,496	-	336,900,000	20,000,000	1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33,690,000	101,070,000
			6~10층	9	98,329,504	249,070,496	-	347,400,000	20,000,000	1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104,220,000
			11~20층	17	98,329,504	252,570,496	-	350,900,000	20,000,000	1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105,270,000
			21층~	25	98,329,504	256,170,496	-	354,500,000	20,000,000	1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106,350,000
	29	106동(3호)	1층	1	98,329,504	217,970,496	-	316,300,000	20,000,000	1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31,630,000	94,890,000
			2층	1	98,329,504	224,870,496	-	323,200,000	20,000,000	1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32,320,000	96,960,000
			3층	1	98,329,504	231,770,496	-	330,100,000	20,000,000	1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33,010,000	99,030,000
			4~5층	2	98,329,504	235,170,496	-	333,500,000	20,000,000	1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33,350,000	100,050,000
			6~10층	5	98,329,504	249,070,496	-	347,400,000	20,000,000	1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34,740,000	104,220,000
			11~20층	8	98,329,504	252,570,496	-	350,900,000	20,000,000	1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35,090,000	105,270,000
			21층~	11	98,329,504	256,170,496	-	354,500,000	20,000,000	1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106,350,000
59.9937B	33	101동(4호)	2층	1	98,445,984	235,154,016	-	333,600,000	20,000,000	1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33,360,000	100,080,000
			3층	1	98,445,984	242,254,016	-	340,700,000	20,000,000	1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34,070,000	102,210,000
			4~5층	2	98,445,984	245,754,016	-	344,200,000	20,000,000	14,420,000	34,420,000	34,420,000	34,420,000	34,420,000	34,420,000	34,420,000	103,260,000
			6~10층	5	98,445,984	249,354,016	-	347,800,000	20,000,000	1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04,340,000
			11~20층	9	98,445,984	252,854,016	-	351,300,000	20,000,000	1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105,390,000
			21층~	15	98,445,984	256,454,016	-	354,900,000	20,000,000	15,490,000	35,490,000	35,490,000	35,490,000	35,490,000	35,490,000	35,490,000	106,470,000
	25	106동(4호)	2층	1	98,445,984	225,054,016	-	323,500,000	20,000,000	1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32,350,000	97,050,000
			3층	1	98,445,984	231,954,016	-	330,400,000	20,000,000	1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33,040,000	99,120,000
			4~5층	2	98,445,984	235,454,016	-	333,900,000	20,000,000	1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33,390,000	100,170,000
			6~10층	5	98,445,984	249,354,016	-	347,800,000	20,000,000	1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34,780,000	104,340,000
			11~20층	9	98,445,984	252,854,016	-	351,300,000	20,000,000	1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35,130,000	105,390,000

[illegible]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illegible]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illegible]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illegible]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옵션		실내기	제조사	옵션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예정일)
59A	일반형	옵션1	거실+안방	LG	3,500,000	350,000	3,15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5,600,000	560,000	5,040,000
	공기청정형	옵션1	거실+안방		4,400,000	440,000	3,96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7,500,000	750,000	6,750,000
59B	일반형	옵션1	거실+안방		3,500,000	350,000	3,15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5,800,000	580,000	5,220,000
	공기청정형	옵션1	거실+안방		4,400,000	440,000	3,960,000
		옵션2	거실+안방+침실1+침실2		7,500,000	750,000	6,750,000
84A	일반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5,000,000	500,000	4,50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400,000	740,000	6,660,000
	공기청정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200,000	920,000	8,280,000
84B	일반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5,400,000	540,000	4,86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800,000	780,000	7,020,000
	공기청정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9,200,000	920,000	8,280,000
102	일반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5,500,000	550,000	4,9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9,200,000	920,000	8,280,000
	공기청정형	옵션1	거실+주방+안방		6,500,000	650,000	5,850,000
		옵션2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11,500,000	1,150,000	10,350,0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기존 냉매매립배관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 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일반가구, 특화 디자인 가구 공급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타입	옵션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예정일)
캐슬 퍼펙트유틸리티	84A, 102	2,900,000	290,000	2,610,000
캐슬 다이닝플러스	84B	3,000,000	300,000	2,700,000
주방 스타일업 패키지	59A, 59B, 84A, 84B, 102	500,000	50,000	450,000
캐슬 홈가든 (슬라이딩도어+바닥타일)	84A, 102	3,200,000	320,000	2,880,000
3연동 중문	59A, 59B, 84A, 84B, 102	1,600,000	160,000	1,440,000
침실2 붙박이장	59A, 59B, 84A, 84B, 102	850,000	85,000	765,000
안방 붙박이장	84A	2,200,000	220,000	1,980,000
쇼룸형 드레스룸	84B	2,900,000	290,000	2,610,000

• 추가선택품목 가전기기 공급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제조사	모델명	타입	옵션금액	납부일정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예정일)
빌트인김치냉장고	LG	R-D222NX/WX	전평형	1,700,000	170,000	1,530,000
빌트인양문형냉장고	LG	R-L712JCS	전평형	6,000,000	600,000	5,400,000
하이브리드 쿡탑	쿠쿠	CIHR-F301FB	전평형	500,000	50,000	450,000
공기청정기겸용 식탁 등	하츠	MURREN	전평형	800,000	80,000	720,000
의류관리기	LG	S3BF	84A, 84B, 102	1,780,000	178,000	1,602,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통합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함.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275906	롯데건설(주)	-
추가 선택품목 잔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465101-01-275919	롯데건설(주)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안내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유의사항

- 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대금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기타 주요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89,527,240,000	제 01292019 - 101 - 0005200호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사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 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가야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266(가야동)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84171-0005579	110111-001476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및 전기통신감리
회사명	㈜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 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한국나이스기술단
감리금액	2,969,151,900	822,724,700	968,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Ⅷ 유의사항

● 입주자 설계 고지사항

구분		설계공지내용	비고
	단지주변 도로	단지 북측 50m도로(가야대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됩니다. 해당 도로의 지하에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개금역 - 동의대역 선로구간이 위치하고 단지내 도로변 측에는 약 12m~13m의 방음벽이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소음, 조망,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음벽의 높이 및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남측 26m, 20m도로(냉정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됩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측 50m도로(관문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됩니다. 단지내 도로변 측에는 약 14m의 방음벽이 설치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소음, 조망,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음벽의 높이 및 크기,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측 수정터널과 연결되는 고가도로(가야고가)로 인하여 가로등, 이동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서측 23m, 20m 도로(가야공원로)의 경우, 보행 가능한 보도가 설치됩니다.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apt2you 및 사업주체)되며, 입주자 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Ⅴ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 · 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19.07.25.(목)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또는 APT2you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19.08.05.(월)~2019.08.07.(수)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동 · 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에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당사(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최초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최초 입주지정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부대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Ⅵ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59A	59B	84A	84B	102
확장금액	12,000,000	12,000,000	15,500,000	13,900,000	19,900,000
계약금(10%)	1,200,000	1,200,000	1,550,000	1,390,000	1,990,000
잔금(90%)	10,800,000	10,800,000	13,950,000	12,510,000	17,91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요망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계약금 계좌	국민은행	465101-01-275906	롯데건설(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 잔금 계좌	국민은행	465101-01-275919	롯데건설(주)	계약자별 가상계좌 별도안내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샤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 ·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주소 : www.lottecastle.co.kr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 ☎051-898-0100

LOTTE CASTLE

7월 12일 GRAND OPEN

|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분양일정 |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월 17일(수)	인터넷 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에서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7월 18일(목)	인터넷 신청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 KB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2순위	7월 19일(금)		

051-898-0100

총935세대 59~102㎡ (전용면적)

현 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공원CG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장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36층 6개동 총 9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시행사 : 가야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롯데건설(주)